2023. 3. 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일러두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관할위원회
   -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 ····· 정관등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입후보예정자

2.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제출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 · 배부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목 차

Ⅰ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1. 임기 및 선거일 ····· 3
2. 후보자등록 ····· 3
3. 선거운동 ····· 3
4. 투표 및 개표 ····· 4
5. 당선인 결정 ····· 5

Ⅱ | 후보자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 9
2. 후보자등록 신청 ····· 15
3. 등록무효 사유 ····· 22
4. 후보자 기호 결정 ····· 22
5. 후보자 사퇴 신고 ····· 22

Ⅲ |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 25
2. 투표참관인 선정 · 신고 등 ····· 25
3. 개표참관인 선정 · 신고 등 ····· 28

Ⅳ | 선 거 운 동

1. 선거운동의 정의 ····· 33
2. 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 33
3. 선거공보 ····· 34
4. 선거벽보 ····· 36
5. 어깨띠 · 윗옷 · 소품 ····· 37
6.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37
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37
8.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39
9.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에 의한 선거운동 ····· 39
10. 제한 · 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 40

Ⅴ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 조합원과의 약속 ····· 43
2. 외국의 사례 ····· 44
3. 조합장선거와 매니페스토 ····· 45
4. 매니페스토 공약 만들기 ····· 46
5. 매니페스토 공약의 요건 ····· 47

* | 부 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51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보자 준수사항 ····· 53
3. 각종 신고 · 신청 · 제출 서식 목록 ····· 54

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후보자의 주요 신고·신청 및 참여사항

일 정	실 시 사 항	장 소
후보자 등록신청 전 (토·일, 공휴일은 제외)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사전검토	관할위원회
2. 21.(화) ~ 2. 22.(수)	후보자등록신청 (09:00 ~ 18:00)	관할위원회
2. 22.(수) ※ 관할위원회가 정한 시각	후보자회의 참석(기호 추첨)	
2. 25.(토)까지	선거공보·선거벽보 제출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장소
3. 6.(월)까지	투표참관인 신고	관할위원회 (또는 대행위원회)
3. 7.(화)까지	개표참관인 신고	

Ⅰ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1 임기 및 선거일

- **선 거 일** : 2023. 3. 8.(수)
- **선거기간** : 2023. 2. 23.(목) ~ 3. 8.(수) (14일간)
- **임　　기** : 4년(2023. 3. 21. ~ 2027. 3. 20.)
- **연임제한**
  - ✔ (농협 · 산림조합) 조합장이 상임일 경우 2차에 한해 연임 가능
  - ✔ (수협) 조합장이 상임일 경우 2차, 비상임일 경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된 경우에는 연임제한 횟수에 미포함(단, 수협 비상임 조합장은 제외)

2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23. 2. 21.(화) ~ 2. 22.(수)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2023. 2. 23.(목) ~ 3. 7.(화) (13일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 **선거운동의 정의**
  -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4 투표 및 개표

○ 투표일시 : 2023. 3. 8.(수) 오전 7시 ~ 오후 5시

※ 다만,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임.

○ 투표절차

✔ 투표소 입소→본인여부 확인(본인확인기를 이용 신분증명서를 스캔한 후 선거인이 손도장 또는 서명)→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 투입→퇴소

○ 개 표

✔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 · 봉인 검사후 개함

✔ 개표절차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수작업개표의 경우 '개함·점검부')] → 선거별 투표지 분류(개함·점검부 또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개함·점검부 또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분류된 투표지 심사 · 집계(심사 · 집계부) →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상황 보고

5 당선인 결정

○ 농 협

구 분	결 정 방 법
총회 선출	•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 ※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총회 외 선출	•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
대의원회 선출	•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 ※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 •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도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수 협

구 분	결 정 방 법
총회 외 선출	•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 ※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 •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사퇴 · 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 · 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 ※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
총회 선출	•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 ※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 •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사퇴 · 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대의원회 선출	•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 · 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

II. 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후보자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후보자 등록신청 전(토·일, 공휴일은 제외)
- 장 소 : 관할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 ✔ 선거공보 · 선거벽보 등의 원고
  - ✔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

개 요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23. 2. 21.(화) ~ 2. 22.(수) [매일 09:00 ~ 18:00]
- 접 수 처 : 관할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서 류 명	농 협	수 협	비 고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	○	필수
가 족 관 계 증 명 서 (일 반)	○	○	필수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확인서 [농협은 출자금원장 사본 또는 개인지분정보조회(시스템 출력분) 포함]	○	○	필수
연 체 채 무 유 무 확 인 서	○	○	필수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	○	필수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	○	필수
기 탁 금 무 통 장 입 금 표 (기탁금을 정관등으로 정하였을 경우)	○	○	필수
퇴 직 증 명 서 (해당자에 한함)	○	○	
최 종 학 력 증 명 서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	○	
공 명 선 거 실 천 서 약 서	○	○	
후 보 자 의 인 영 신 고 서	○	○	
이 력 서	○	○	
후 보 자 사 진 2 매 (칼 라 5㎝ × 7㎝)	○	○	언론제공용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고란에 "필수" 표시가 되어 있는 제출대상 서류를 미제출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무효)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됨.

Ⅱ |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가. 농협

1) 적극적 요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

2) 소극적 요건

가) 법적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제59조 ·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은 제외함.

(11)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12)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13)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임기개시일(2023. 3. 21.) 현재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기개시일(2023. 3. 21.)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정관등 결격사유

(1) 임기만료일(2023. 3. 20.) 현재 다음의 직을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 해당 조합 · 다른조합 · 품목조합연합회 · 중앙회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 · 농협은행 ·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의 직원 · 상임이사 · 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나)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 ·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다) 자격산정기준

(1) 피선거권자의 자격산정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임기개시일(2023. 3. 21.) 현재로 산정함.

(2) 조합 임 · 직원 등 입후보제한직의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나. 수협

1) 적극적 요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

2) 소극적 요건

가) 법적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2018. 12. 11.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제59조 ·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 해당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12)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3)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14)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임기개시일(2023. 3. 21.) 현재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정관등 결격사유

(1) 임기만료일(2023. 3. 20.) 현재 다음의 직을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 상임감사 · 직원, 다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 임직원, 해당 조합 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아래 "(2)"에서 같음.)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나)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해당 조합의 비상임 이사 · 비상임 감사 · 대의원 · 어촌계장(해당 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다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의 비상임 임원 및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다) 자격산정기준

(1) 피선거권자의 자격산정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로 산정함.

(2) 조합 임 · 직원 등 입후보제한직의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2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23. 2. 21.(화) ~ 2. 22.(수)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록장소 : 관할위원회 사무실

라. 등록신청서 접수순서 : 등록장소 도착순서에 의함.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및 준비절차

1) 농 협

가)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필수여부	비고
후보자등록신청서	필수	[붙임 1] 참고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필수	구·시·군 및 읍·면·동의 장 발행
출자금원장 사본 또는 개인지분정보조회 (시스템 출력분) ※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확인서 포함	필수	[붙임 2] (해당 조합장 발행)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필수	[붙임 3] (해당 조합장 발행)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필수	[붙임 4] (해당 조합장 발행)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	필수	[붙임 5] (해당 조합장 발행)
기탁금무통장입금표 (기탁금을 정관등으로 정하였을 경우)	필수	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첨부
퇴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해당기관의 장 발행

서 류 명	필수여부	비고
최 종 학 력 증 명 서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 발행
공 명 선 거 실 천 서 약 서		[붙임 6] 참고
후 보 자 의 인 영 신 고 서		[붙임 7] 참고
이 력 서		임의서식
후 보 자 사 진 2 매 (칼 라 5 ㎝ × 7 ㎝)		5㎝×7㎝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전자파일 동시 제출) ※ 사진규격 등 안내 : [붙임 8] 참고

나) 등록신청서류 준비절차

(1) 후보자등록신청서

(가) 작성방법: [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되, 작성방법은 **부록 ① 참고**

(나) 유의사항 : 각 항목마다 사실대로 작성하고, 신고하려는 후보자 인영으로 날인함.

(2)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 발급방법: 후보자가 구 · 시 · 군청 및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후보자등록 시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으로도 발급가능

(나) 유의사항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신청함.

※ 후보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불요

(3) 출자금원장 사본 또는 개인지분정보조회(시스템 출력분)

(가) 발급방법 : 후보자가 해당 조합에 신청함.

※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확인서(붙임2)' 도 함께 발급 신청

(나) 유의사항

○ 결격사유 기준일인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이후에 발급받아야 함.

○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함.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가) 발급방법 : 후보자가 [붙임 3]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조합에 신청함.

(나) 유의사항

○ 결격사유 기준일인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이후에 발급 받아야 함.

○ 해당 조합에 신청 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 첨부하여야 함.

※ [붙임 3]의 덧붙임 참고

(5)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가) 발급방법 : 후보자가 [붙임 4]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조합에 신청함.

(나) 유의사항 : 결격사유 기준일인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이후에 발급받아야 함.

(6)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

(가) 발급방법 : 후보자가 [붙임 5]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조합에 신청함.

(나) 유의사항 : 후보자등록 전일(실제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의 전일을 말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

(7)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 발급대상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예)」,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예)」,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예)」(이하 농협정관이라 함.) 제69조(피선거권)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나)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조합 · 기관 · 단체 등

(다)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라) 사직시점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

입후보 제한 대상자(농협정관 제69조제1항제2호 · 제3호)

- 임기만료일 현재 다음의 직을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2. 12. 20.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자)
  - 해당조합 · 다른조합 · 품목조합연합회 · 중앙회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 · 농협은행 ·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의 직원 · 상임이사 · 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다음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 ·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

(8) 최종학력증명서 : 후보자가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기관에 신청함.

(9)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 후보자가 [붙임 6]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10)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후보자가 [붙임 7] 서식에 따라 각종 신고 · 신청 · 제출 등 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찍어 제출함.

(11) 이력서 :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함.(임의서식)

(12) 후보자 사진 2매(전자파일도 동시 제출 하되, 사진파일 규격 등 권고사항은 [붙임8] 참조)

다) 기탁금의 납부

(1) 납부금액 :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금액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해당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음.

(2)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 단, 관할위원회 안내에 따라 사전 납부 가능

(3) 납부방법 : 관할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 신청자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4) 납부계좌 안내

○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농협 301-0317-5465-51

○ 예금주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반환 및 귀속

- 기탁금의 반환
  -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기한 : 2023. 4. 7.(선거일 후 30일) 이내
  -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 기탁금의 귀속(해당 위탁단체로 귀속)
  - 귀속사유 :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귀속금액 :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
  - 귀속기한 : 2023. 4. 7.(선거일 후 30일) 이내

2) 수 협

가)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필수여부	비고
후보자등록신청서	필수	[붙임 1] 참고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필수	구·시·군 및 읍·면·동의 장 발행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필수	[붙임 2] (해당 조합장 발행)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필수	[붙임 3] (해당 조합장 발행)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필수	[붙임 4] (해당 조합장 발행)
비경업 사실 확인서	필수	[붙임 5] (해당 조합장 발행)

서 류 명	필수여부	비고
기탁금무통장입금표 (기탁금을 정관등으로 정한 경우)	필수	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첨부
퇴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해당기관의 장 발행
최종학력증명서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 발행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붙임 6] 참고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붙임 7] 참고
이력서		임의서식
후보자 사진 2매 (칼라 5 ㎝ × 7 ㎝)		5㎝ × 7㎝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전자파일 동시 제출) ※ 사진규격 등 안내 : [붙임 8] 참고

나) 등록신청서류 준비절차

(1)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유의사항 : 농협과 같음.

(3)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가) 발급방법 : 후보자가 해당 조합에 신청함.

(나) 유의사항

○ 결격사유 기준일인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이후로 발급받아야 함.

○ 선거일 공고일(2023. 2. 16.) 현재 해당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신청함.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 (5)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 (6) 비경업 사실 확인서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농협과 같음.

(7)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 발급대상 :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이하 수협 규정이라 함.) 제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나)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조합 · 기관 · 단체 등

(다)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라) 사직시점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

입후보 제한 대상자(수협규정 제8조제1항제1호 · 제2호)

- 임기만료일 현재 다음의 직을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3. 1. 19.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자)
  -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 상임감사 · 직원, 다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 임직원, 해당 조합 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다음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 · 비상임감사 · 대의원 · 어촌계장(해당 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다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의 비상임 임원 및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

(8) 최종학력증명서 · (9)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 (10)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11) 이력서 · (12) 후보자 사진의 작성 · 발급 · 제출방법 등 : 농협과 같음.

다) 기탁금의 납부 안내 및 반환, 귀속 조건 : 농협과 같음.

3 등록무효 사유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등록신청서류 목록 중 "필수" 표기된 서류를 말함.)

3)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함.)

4 후보자 기호 결정

가. 결정시기 : 2023. 2. 22.(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 후)

나. 결정기관 : 관할위원회

다. 결정방법

1)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위임장 제출, [붙임 9] 서식)의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함. (단,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추첨함.)

2)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추첨순위 결정을 위한 추첨을 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기호 결정을 위한 추첨을 함.

5 후보자 사퇴 신고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 고 처 : 관할위원회

다. 신고방법 : 후보자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함.

라. 신고서식 : [붙임 10] 서식에 의함.

III. 투표 및 개표참관 등

Ⅲ |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후보자가 해당 조합의 관련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농·수·산림조합의 각 정관등에 규정된 명부사본 교부방법 등

- 신청기간 : **(농협·산림조합)** 후보자등록기간 중, **(수협)** 선거운동기간 중
- 신청방법 : 해당 조합에 서면에 의한 신청
- 사본교부 :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함.
- 기타사항 : 후보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위 내용은 각 조합의 정관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참고로 기재한 것이므로,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해당 조합에 문의하기 바람.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1) 일반투표("선거일 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 : 선거일전 2일(2023. 3. 6.)까지

2) 순회투표 : 순회투표일전 2일까지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관할위원회 또는 대행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순회투표소 지정·운영

다. 신 고 처 : 관할위원회(또는 대행위원회)

※ 대행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를 관할위원회가 받을 수 있음.

라. 신고인원

1) 일반투표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 2명 이내

2) 순회투표 : 후보자마다 순회투표소별 1명

마. 투표참관인의 자격

1)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 자 : 선거인

2)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가) 후보자

나) 후보자의 배우자

다) 해당 조합의 임 · 직원

바. 투표참관인 지정

1) 정 수

가) 일반투표 : 투표소마다 12명

나) 순회투표 : 일반투표와 같음.

2) 선정방법

가) 신고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

(1)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함.

(2)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 · 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이 넘는 경우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신고서에 기재된 순위에 따름)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따라 지정함.

나)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

(1) 일반투표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함.

※ 이 경우 선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2) 순회투표

순회투표참관인 신고가 없는 경우 해당 순회투표소의 순회투표자를 입회시킴.

사. 교체시기

1) 일반투표 : 신고 후 언제든지(선거일 투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2) 순회투표 : 순회투표 관리를 위하여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아. 신고서식 : [붙임 11] 서식에 의함.

자. 교대참관(일반투표에 한함.)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표관리관의 결정으로 교대참관 가능

※ 교대참관은 후보자별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함.

차. 참관요령

1) 투표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2)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3)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4) 일반투표소의 경우 투표종료 후 투표함 등의 개표소 회송시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에 한하여 동반함.

5) 순회투표소의 경우 순회투표 종료 후 순회투표함 등을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에 인계 · 인수하는 과정에 입회함.

3 개표참관인 선정 · 신고 등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

다. 신 고 처 : 관할위원회(또는 대행위원회)

※ 대행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를 관할위원회가 받을 수 있음.

라. 신고인원 : 개표소마다 2명 이내

마. 개표참관인의 자격 : 투표참관인 자격과 동일함.

바. 개표참관인 지정

1) 후보자가 선정 · 신고한 인원을 개표참관인으로 지정함.

2) 다만,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위원회 또는 대행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함.

※ 이 경우 선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사.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선거일 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아. 신고서식 : [붙임 11] 서식에 의함.

자. 교대참관 :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대참관 가능

※ 교대참관은 후보자별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함.

차. 투표·개표참관인 겸임

1)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 투표참관인 신고 시 신고서의 비고칸에 "개표참관인 겸임"으로 적음.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이 됨.

카. 참관요령

1)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 거소투표·순회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별 1인씩 우편투표함·순회투표함의 개표장 이송시 참관가능

2)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3)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함.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개표상황을 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Ⅳ. 선 거 운 동

Ⅳ | 선 거 운 동

1 선거운동의 정의

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나. 선거운동기간 : 2023. 2. 23.(목) ~ 3. 7.(화) [13일간]

다. 선출유형별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선출유형별		
	총회 외	총회	대의원회
선거공보	○	○	○
선거벽보	○	○	×
어깨띠 · 윗옷 · 소품	○	○	×
전화 · 문자메시지	○	○	○
정보통신망	○	○	○
명함	○	○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	○

3 선거공보

가. 선거공보의 작성

1) 작성주체 : 후보자

2) 작성수량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3) 규격 등

종 류	규 격	면 수
1종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4) 게재사항

가) 선거공보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나) 사진 · 학력 · 경력 · 학위 · 상벌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선거공보 · 선거벽보 · 명함에 학력 게재 시 안내사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조합법 및 정관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비정규학력도 선거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음.
  -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를 후보자등록 시 관할위원회에 제출
  - ※ 국내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력의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를 제출
  - 비정규학력의 경우 선거공보 등에 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증명서 제출 불필요)
  - ※ 비정규학력인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를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로 기재 시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음.

선거공보 · 선거벽보의 위법내용 등에 대한 조치

-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
  - 선거인이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 학력 · 학위 · 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관할위원회가 해당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후보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내용이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하며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함.

선거공보·선거벽보의 위법내용 등에 대한 조치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나. 선거공보의 제출

1) 제출기한 : 2023. 2. 25.(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함.

2) 제출장소 · 수량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장소 · 수량

※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가 미발송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지정내역에 따라 발송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함.

3) 제출방법 : 수량확인 및 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500부 단위로 간지를 넣거나 묶어서 제출함.

4) 제출서식 : [붙임 12] 서식에 의함.

다. 선거공보의 발송

1) 발 송 자 : 관할(대행)위원회 또는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

2) 발송시기 : 2023. 2. 28.(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3) 발송대상 : 선거인(거소투표자 · 순회투표자 포함)

선거공보·선거벽보 내용의 정정 요청

- 원 칙 : 제출된 선거공보·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 다만 오기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 2023. 2. 25.(선거공보·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다음의 방법으로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음.
  - 방 법 : 후보자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

※ 해당 내용의 정정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신청서식 : [붙임 13]

4 선거벽보

가. 선거벽보의 작성

1) 작성주체 : 후보자

2) 작성수량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3) 작성방법 : 길이 53㎝ 너비 38㎝, 길이를 상하로 하여 종이로 1종 작성

4) 게재사항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선거벽보의 제출

1) 제출기한 : 2023. 2. 25.(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함.

2) 제출장소·수량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장소·수량

※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조합이 통보한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함.

3) 제출서식 : [붙임 12] 서식에 의함.

다. 선거벽보의 첩부

1) 첩 부 자 : 관할(대행)위원회 또는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

2) 첩부시기 : 2023. 2. 27.(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3) 첩부장소 : 해당 조합에서 관할위원회에 통보한 첩부장소

※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을 말함.

4) 보완첩부

가) 첩부권자 : 후보자

나) 첩부사유 :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

다) 첩부방법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임

5 어깨띠 · 윗옷 · 소품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종류 및 규격 : 제한없음

라. 방 법 :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6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다. 방 법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 ·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1)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

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1) 주 체 : 관할위원회

2) 사 유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

3) 조치방법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 ·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마. 위법행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권자 : 삭제된 정보를 게시한 사람

2) 이의신청기간 : 해당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

3) 방 법 : [붙임 14]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

4) 결과통지

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 ·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함.

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8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규　　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라. 게재사항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방　　법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바.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제한장소

1) 병원 · 종교시설 · 극장의 안

2)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9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에 의한 선거운동

가. 대상선거 : 총회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나. 개최시기 및 장소 : 투표개시 전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이하 '투표소등'이라 함.)에서 실시

※ 관할위원회에서 후보자 소견발표 개시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함.

다. 발표시간 :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 안에서 동일하게 배정

※ 관할위원회에서 발표시간을 정하여 공고함.

라. 진 행 자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투표관리관등'이라 함.)

※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함.

마. 진행방법

1) 발표순서 : 후보자 기호 순

2) 후보자 소개 : 후보자가 연단에 나오기 전에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경력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름)을 소개

3) 발표시간 기산시점 : 후보자가 연단에 나와 청중에게 인사한 때부터

4) 발표내용 : 조합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

5) 유의사항

-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 까지 투표소등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후보자가 법 제61조(허위사실공표죄) ·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등이 이의 중지를 명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위법내용 발언에 대한 필요 조치(예)

▸ 후보자가 위법내용(허위사실 또는 후보자등 비방) 발언시 경고카드를 제시하여 경고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경우 마이크 전원차단 및 발언 중단조치

- 소견발표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 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 · 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10 제한 · 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별도 배부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참고

V.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Ⅴ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 조합원과의 약속

-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출마하는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추진 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임.

  ※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증거'를 뜻하는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한 것이며,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 선언'을 의미

- 이에 대하여 조합원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하여 투표하는 것임.

- 선거 후 당선인은 선거 때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조합원은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임기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본 후 다음 선거에서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임.

≪ 매니페스토 순환주기 ≫

후보자	후보 등록	선거권자	투표	당선인	임기중	선거권자		선거권자
공약작성	⇨	공약비교	⇨	공약실천	⇨	공약이행 평가	⇨	다음선거 지지여부 결정

-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혈연 · 학연 · 지연 등의 연고주의와 비방 ·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 당선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 금권 등을 통하여 당선되려는 기존의 선거관행을 극복하고 정책공약 및 실천으로 평가받는 선진 선거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2006년 5 · 31 지방선거에서 도입되었음.

2 외국의 사례

- 매니페스토 운동은 18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보수당 문헌에 의하면 1834년 탐워스(Tamworth)에서의 선거에서 당시 로버트 필(Robert Peel)당수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하였음.

- 현재와 같은 매니페스토는 1935년 보수당의 매니페스토가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1997년 노동당(토니 블레어)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집권에 성공하고 그 후 재집권에도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됨.

- 영국에서 시작된 매니페스토는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으로 전파되어 각 국의 실정에 맞게 발전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매니페스토를 '플랫폼(platform)'으로 부르고 독일에서는 '선거강령(Wahlprogra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2003년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제시한 다수의 혁신파 지사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매니페스토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중의원선거부터는 중앙선거로 확산되었고 2009년 8월에는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정권교체에 성공한 바 있음.

  ※ 2003년 가나가와현의 지사선거에서 무소속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매니페스토를 공표하여 당선됨으로써 주목을 받았으며, 2007년 재선에도 성공하여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연결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킴.

- 영국에서는 처음부터 정당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발전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지방선거 후보자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어 중앙선거로까지 발전하였음.

3 조합장선거와 매니페스토

조합장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공약 제시의 중요성

-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리로 지위와 권한이 클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 구상 및 제시가 매우 중요함.
- ✔ 조합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집행은 조합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요자별 맞춤형 매니페스토 공약 제시를 통하여 향후 공약 실천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어 신규 후보자의 경우 본인을 알릴 기회가 더욱 적으나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매니페스토 공약 제시를 통하여 인지도 부족의 한계를 극복 가능함.
- ✔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정보를 조합원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더욱더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매니페스토 공약의 제시가 필요함.

조합장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정착의 필요성

- ✔ 매니페스토형 공약을 제시하면 후보자 비교 및 평가가 용이하여 조합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기여함.
- ✔ 비방 ·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Negative)' 선거운동이 근절되고 '포지티브(Positive)' 선거운동이 정착될 수 있음.
- ✔ 정책중심의 선거풍토가 정착됨으로써 금권선거나 비방 · 흑색선전 등 부정적 선거문화가 사라지고 선진 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음.
- ✔ 지역단위 조합장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건전한 토양이 마련된다면 향후 공직선거에서의 정책선거 및 책임정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4 매니페스토 공약 만들기

- 공약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 임기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사진임.

- 좋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 자문, 여론수렴, 언론 · 문헌 정보 수집,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조합 내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공약작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수집된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공약추진의 효과와 공약들 간의 충돌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함.

- 해야 할 일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재원마련 가능성, 현행법이나 제도와의 충돌 여부, 임기 내 추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특히, 최근 조합원의 후보자 선택시 공약의 사전 평가 및 사후 이행평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유념하여 최종공약을 선정해야 함.

≪ 매니페스토 공약만들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합 관련 현안 찾기	해야 할 일 정하기	해결방법 찾기	최종공약 선정

5 매니페스토 공약의 요건

■ 매니페스토 공약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함.

- ✔ 구체적으로 무엇(목표 : **what**)을 할 것인지
- ✔ 왜(이유 : **why**) 하여야 하는지
- ✔ 어떻게(방법, 재원 : **how**)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 ✔ 언제(기한 : **when**)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 매니페스토 공약의 요건 ≫

공약	요건	고려사항	판단
공약내용	목표	구체적이고 측정(비율, 수치 등)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조합의 우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별 공약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이유	조합의 발전과 미래상을 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조합원의 요구를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후보자의 의지를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	
	방법	가급적 현행법 및 제도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원(사람, 자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입된 비용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얻어야 한다.	
	재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연차별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재원조달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기한	실시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성　　명 : 홍 길 동　　(한자 : 洪 吉 童)
2. 주민등록번호 : 5□0831-1234567
3.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구 □□로 ◎◎
4. 주　　소 : 경기도 ○○시 ○○구 △△로 □□
   [전화번호 :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 010-1234-5678]
5. 직　　업 : 농(임, 수산)업[또는 무직]
6.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
7. 경　　력 : (전) ○○조합 감사
   (현) ○○조합장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2월　일
신 청 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농협 : 출자금원장 사본 또는 개인지분정보조회(시스템 출력분) 포함]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4.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5.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 1부
6. 기탁금 무통장 입금표(또는 이체확인증) 1부.(기탁금을 정관등으로 정하였을 경우)
7.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선거공보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9.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1부
10.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부(관할위원회+대행위원회등 매수 제출)
11. 이력서 1부
12. 후보자 사진 2매(전자파일도 제출)

나.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1. 성 명" 란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그대로 투표용지에 인쇄하게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
"2. 주민등록번호" 란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3. 등록기준지" 란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4. 주 소" 란	•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후보자 본인의 주소지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함. ※ '도로명 주소'를 기재
"5. 직 업" 란	•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1개)을 기재함. ☞ 예시) 농업, 수산업, 임업 등
"6. 학 력" 란	• 학력(비정규 학력 포함)은 출신학교명 또는 수학한 교육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함. ※ "학교명"은 졸업 ·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 외국학력의 경우에는 한글번역문도 함께 제출 ※ 정규학력을 수학한 이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 (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7. 경 력" 란	•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기재함. ※ 현직의 경우 "현", 전직의 경우 "전"으로 표시함.
"8. 신 청 인" 란	• 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보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보자 준수사항

1.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전화, 문자)	법 제28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전자우편)	법 제29조	이메일주소

2.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3.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 · 변조 ·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를 지정 · 공개하여야 함.

7.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수신거부나 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3 각종 신고 · 신청 · 제출 서식 목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 58

2.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농협) / 60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수협) / 61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농협) / 62
   연체채무유무 확인서(수협) / 65

4.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농협) / 68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수협) / 69

5.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농협) / 70
   비경업 사실 확인서(수협) / 71

6.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 72

7.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73

8. 사진파일 규격 등 제출방법 / 74

9.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첨 위임장 / 75

10. 후보자 사퇴신고서 / 76

11. (투표) · (개표)참관인 (선임 · 교체) 신고서 / 77

12.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제출서 / 78

13.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정정요청서 / 79

14.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80

15.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 81

붙임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성　　명 :　　(한자 :　　)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기준지 :

4.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

6. 학　　력 :

7. 경　　력 :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2월　일

신청인　○○○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농협 : 출자금원장 사본 또는 개인지분정보조회(시스템 출력분) 포함]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4.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5.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 1부
6. 기탁금 무통장 입금표(또는 이체확인증) 1부.(기탁금을 정관등으로 정하였을 경우)
7.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선거공보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9.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1부
10.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부(관할위원회+대행위원회등 매수 제출)
11. 이력서 1부
12. 후보자 사진 2매(전자파일도 제출)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2

<조합장선거용>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농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이 선거일 공고일인 2023년 2월 16일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제10호 및 ○○협동조합정관 제○조(임원의 결격사유)제○항제○호에 따라 본 조합에 ○○좌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은 제외)과 본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위 신청인 ○○○㊞

○○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3년 2월 일

○○조합장㊞

<조합장선거용>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수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이 선거일 공고일인 2023년 2월 16일 현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 제11호 및 ○○수산업협동조합정관 제○조(임원의 결격사유)제○항제○호에 따라 본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고, ○○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위 신청인 ○ ○ ○ ㊞

○○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3년 2월 일

○ ○ 조합장 ㊞

붙임 3

<조합장선거용>

연체채무유무 확인서(농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이 선거일 공고일인 2023년 2월 16일 현재 이 조합,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11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위 신청인 ○ ○ ○ ㊞

덧붙임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3년 2월 일

○ ○ 조합장 ㊞

덧붙임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2023. 3. 8.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조합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임원자격 및 피선거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 조회
수집 · 이용할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개인신용정보 : 개인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등 ▶ 기타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조합정관에 따른 임원의 자격 및 피선거권의 제한 사항
보유 ·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임원 임기 종료시까지 수집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는 임원선거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임원선거 입후보 및 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임원선거 입후보 및 임원 재임이 불가능 합니다.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조합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조합, 금융감독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제공 목적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 확인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개인신용정보 : 개인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등 ▶ 기타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조합정관에 따른 임원의 자격 및 피선거권의 제한 사항
제공기간	동의일로부터 임원 임기 종료시까지 제공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는 임원자격 확인 등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됩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임원선거 입후보 및 임원 재임이 불가능 합니다.
제공 동의여부	○○조합에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조합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를 의미합니다.

○○조합 귀중

<조합장선거용>

연체채무유무 확인서(수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이 선거일 공고일인 2023년 2월 16일 현재 이 조합, 중앙회,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12호(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위 신청인 ○ ○ ○ ㊞

덧붙임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3년 2월 일

○ ○ 조합장 ㊞

덧붙임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2023. 3. 8.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조합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임원자격 및 피선거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 조회
수집 · 이용할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개인신용정보 : 개인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등 ▸ 기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조합정관 ·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등에 따른 임원의 자격 및 피선거권의 제한 사항
보유 ·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임원 임기 종료시까지 수집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는 임원선거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임원선거 입후보 및 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임원선거 입후보 및 임원 재임이 불가능 합니다.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조합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조합, 금융감독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제공 목적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 확인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개인신용정보 : 개인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등 ▶ 기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조합정관 · 수산업협동조합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등에 따른 임원의 자격 및 피선거권의 제한 사항
제공기간	동의일로부터 임원 임기 종료시까지 제공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는 임원자격 확인 등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됩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임원선거 입후보 및 임원 재임이 불가능 합니다.
제공 동의여부	○○조합에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조합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를 의미합니다.

○○조합 귀중

붙임 4

<조합장선거용>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농협)

확 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이 선거일 공고일인 2023년 2월 16일 현재 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을 충족하여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위 신청인 ○ ○ ○ ㊞

○○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3년 2월 일

○ ○ 조합장 ㊞

<조합장선거용>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수협)

확 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이 선거일 공고일인 2023년 2월 16일 현재 이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을 충족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13호(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위 신청인 ○ ○ ○ ㊞

○○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3년 2월 일

○ ○ 조합장 ㊞

붙임 5

<조합장선거용>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농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이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항 및 제5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이 조합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위 신청인 ○ ○ ○ ㊞

○○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3년 2월 일

○ ○ 조합장 ㊞

<조합장선거용>

비경업 사실 확인서(수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이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 「수산업협동조합법」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제4항 및 제5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이 조합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위 신청인 ○ ○ ○ ㊞

○○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3년 2월 일

○ ○ 조합장 ㊞

붙임 6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본인은 2023. 3. 8.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이끌어 조합장선거 선진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진정한 공명선거의 완성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을 쓰거나 비방하는 구태를 단호히 벗고 유권자에게 새 희망을 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금품 ·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나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분위기를 과열 · 혼탁하게 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지연 · 혈연 · 학연 등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조합원인 선거인을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우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호간 비방 ·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4.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승복한다.
5. 우리는 이번 선거가 조합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3년 2월 일

후 보 자 : ○ ○ ○ (인)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관할위원회에서 각 조합별 서약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7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후보자 ○○○	인 영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3년 2월 일

후보자 ○○○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대행위원회등에 배부할 수 있는 매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8

사진파일 규격 등 제출방법

1. 디지털 사진(jpg파일) 촬영 규격

○ 해상도 : 300dpi

○ 5cm x 7cm

2.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

○ 5cm x 7cm

<사진 촬영 시 권고 사항>

○ 넥타이선의 배꼽 아래까지 촬영
○ 양쪽 어깨선이 다 보이도록 촬영
○ 얼굴과 몸은 정면을 향하도록 촬영
○ 칼라사진



붙임 9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피위임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후보자와의 관계	

위 사람에게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위임함.

2023년 2월 일

후보자 ○ ○ ○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10

후보자사퇴신고서

1. 선 거 명 :

2. 후보자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퇴 사 유 :

위 본인은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3년 월 일

후보자 ○○○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11

(투표) · (개표)참관인 (선임 · 교체) 신고서

1. 선거명(조합명) :
2. 후보자 성명 :
3. 참 관 인

투표소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비 고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투표) · (개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선임) · (교체) 신고합니다.

2023년 월 일

후보자 ○ ○ ○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개표참관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명"칸을 삭제하여 사용합니다.
2. 교체신고시에는 "비고"칸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3.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참관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지정순위(1, 2)를 "비고"칸에 적어야 합니다.
4. 참관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참관인 수당 수령 계좌)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5. 투·개표참관인은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12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제출서

1. 선 거 명:

2. 후보자성명:

3. 제 출 내 역

구 분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비 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선거공보) · (선거벽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후보자 ○○○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제출하여야 할 수량"은 관할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관할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붙임 13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정정요청서

선 거 명				
후보자	성 명 (한 자)		기 호	
	생년월일 (성 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1. 정정 매수:

2. 정정 내용:

3. 정정 이유:

2023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선거공보) · (선거벽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2023년 월 일

후보자 ○○○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이 신청서는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정 매수"칸에는 관할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

붙임 14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선거명 :　　]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15

2023. 3. 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규
'22. 9. 1.까지	목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3②
9. 21.	수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법§8
9. 22.까지	목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규§3②
9. 21.부터 '23. 3. 8.까지	수 수	**기부행위제한**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12. 20.까지	화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농협정관(예)§69①2 산림규약(예)§8①2
'23. 1. 19.까지	목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수협규정(예)§8①1
2. 17.부터 2. 21.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21.부터 2. 22.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23.	목	**선거기간개시일**		법§13
2. 25.까지	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2. 26.	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0일	법§15①
2. 26.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2. 28.까지	화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3. 3.까지	금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①·②
3. 6.까지	월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7.까지	화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3. 8.	수	**투·개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제8장
4. 7.까지	금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거일후 30일까지	규§44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